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 26 선고 2018가단1032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김순득

변론 종결 2020. 12. 8.

판결 선고 2021.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 2017. 12.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2. 10.경 B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5. 29. B의 채무 259,451,205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하여 그 구상금(원리금)채권을 보유한 사실(대구지방법원 2018차전9464 지급명령), B이 2017. 12. 1.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위 구상금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매처분에 따라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액에 관한 채권의 양도)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B은 금속구조제품의 제조업자이고, 피고는 철판코일을 비롯한 금속제품의 도·소매업자로서 2016. 2. 29.경부터 B에게 금속 원자재를 공급하여 오면서 미수금이 점차 누적되자(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017. 12. 31.까지 누적된 미수금 규모는 적어도 140,000,000원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 규모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그 변제를 수차례 독촉하였고, 그러자 B은 피고와의 물품공급 거래를 유지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피고에 대한 기존 및 장래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직전인 2017. 11. 30. B에게 38,193,0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2. 31.에도 B에게 23,771,8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B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변제조로 2017. 12. 28.

18,749,408원(B이 교부한 19,000,000원 어음의 할인금액이다), 2018. 1. 30.

14,810,510원(B이 교부한 15,000,000원 어음의 할인금액이다)을 각 지급하기도 하면서, 양측의 거래관계는 지속되었다.

3) 이후 B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사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난 2018. 3. 13.에 이르러 발생하였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2018. 5. 29.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 B이 담보를 제공해서라도 피고와의 거래 중단을 피하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편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국현

별지